의 안 번 호	제425호
의결연월일	2017. 11. 1

-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26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1. 1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관광시설사업소장 : 박 호 동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시설사용의 예약 관련 세부 규정 추가(안 제10조)

○ 시설사용료를 선납 후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공제기준을 재규정 (안 제11조제2항)

개정 전		개정 후	
취소 시기	환 불 액	취소 시기	환 불 액
·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	· 전액	· 사용예약일 10일전까지	· 전액
·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	· 사용료의 90%	·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	· 사용료의 80%
·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	· 사용료의 80%	·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	· 사용료의 70%
· 사용 당일	· 사용료의 70%	· 사용 당일	· 사용료의 50%

○ 봉수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(안 「별표」 시설사용료)

구 분	평 형	요금 인상			비고
		성·비수기	전	후	
숲속의집	5인실 (29㎡ ~ 36㎡)	비수기	42,000	46,000	일괄 10% 인상 (안)
		성수기	70,000	77,000	
	6인실 (39㎡ ~ 46㎡)	비수기	49,000	54,000	
		성수기	82,000	90,000	
	8인실 (49㎡ ~ 56㎡)	비수기	56,000	62,000	
		성수기	94,000	100,000	
	16인실 (8인실*2)	비수기	112,000	123,000	
		성수기	188,000	207,000	
산림문화 휴양관	5인실 (29㎡ ~ 36㎡)	비수기	40,000	44,000	
		성수기	68,000	75,000	
	6인실 (39㎡ ~ 46㎡)	비수기	48,000	53,000	
		성수기	80,000	88,000	
	10인실 (59㎡ ~ 66㎡)	비수기	69,000	76,000	
		성수기	115,000	126,000	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○ 본 조례안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별표 '시설사용료' 를 일괄 10% 인상하고, 제10조 '시설사용료 납부 방법' 과 제11조 '예약 취소시 환불 기준'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❍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❍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.

6. 심 사 결 과

❍ 수정가결

※ 수정내역

❍ **안 제6조 제1항**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

숲속의 집 성수기 사용료를

5인실은 77,000원에서 84,000원으로 수정하고,

6인실은 90,000원에서 98,000원으로 수정하고,

8인실은 100,000원에서 112,000원으로 수정하고,

16인실은 207,000원에서 225,000원으로 수정하고,

❍ **안 제11조 제2항** 제1호의 전액을 80%로 수정하고,

제2호의 80%를 50%로 수정하고,

제3호의 70%를 30%로 수정하고,

제4호의 사용료의 50% 환불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함 으로 수정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 음